

1.2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 2004. 03. 29.
개정 2017. 09. 14.
개정 2017. 11. 02.
개정 2019. 04. 22.
개정 2020. 10.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정관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초당대학교산학협력단을 설립하며,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국가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초당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초당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정의) ① 본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산학협력”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체등”이라 함은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를 말한다.
3. “교직원등”이라 함은 교원·직원과 산학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양도 및 활용이 가능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신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을 말한다.

② 본 조에서 규정한 정의 이외의 경우에는 관련법의 정의규정에 의한다.

제5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산학협력단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초당대학교의 소속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9. 초당대학교와 초당대학교의 교지 안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 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

구소(이하 “협력연구소” 라 한다)간의 상호 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초당대학교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1. 기타 산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1. 부속기관 : 창업보육센터, 기술이전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업지원서비스센터, 드론교육원<개정 2017.11.02. 2020.10.23.>
2. 부설연구소 : 우리 대학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기타 : BK21사업단을 비롯한 국책사업단
4.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

제 2 장 조 직

제7조(이사)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두며, 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제8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 감사1인을 두며, 감사는 총장이 임명한다.

-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단장에게 통지한다.
- ③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행정사무)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행정부서에는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초당대학교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파견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4.22>
- ④ 산학협력단 소속 구성원의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연구 및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⑥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신규 2019.04.22>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기획

연구처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신설 2019.04.22>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4.22>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4.22>
3. 정관 개정에 관한 <개정 2019.04.22>
4. 시행을 위한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4.22>
5.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4.22>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9.04.22>

제 3 장 재정 및 회계

제12조(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산학협력단 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5. 기타 총장이 정하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제13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기부금·보조금
3. 사업수익
4. 차입금 등

제14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실험·실습시설이나 장비 등의 사용료
7. 학교기업의 운영·수입금 <신설 2019.04.22>
8. 그 밖에 산학협력 사업에 의한 수입금 <호 변경 2019.04.22>

②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4.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5.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6.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대학의 시설 및 운영 등 대학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비
 8. 학교기업의 운영 지원비 <신설 2019.04.22>
 9. 그 밖에 산학협력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호 변경 2019.04.22>
- ② 제1항 제3호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③ 외부연구과제를 수행한 본교 교원에게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연구자 및 지원 인력에게 연구개발성과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연구개발성과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4.22>

제16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예산 외 채무의 부담이나 재산상 권리의 포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회계원칙)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산학협력 회계처리규칙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준용하여 회계 처리한다.

- ②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 ③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과목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9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 외 채무의 부담
3. 재산상 권리의 포기

제20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21조(결산 및 보고)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총장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22>

제 4 장 보 칙

제2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법원에 변경 등기하여야 한다.

제23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 해산 완료 후 잔여재산은 초당대학교에 귀속된다.

제2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공고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초당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22>

제27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산학협력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③ (권리이전) 총장은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0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